

# 명예교수규정

2016.11.21.제정 2023.04.01.일부개정

<교무팀>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정의)** 명예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추대되어진 자를 말한다.

**제 3 조 (자격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. (개정 2023.4.1.)

1. 퇴직당시 본 대학교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교육·학술 분야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
2.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명예교수가 될 수 없다.

1. 본 대학교 재직 중 정직이상의 징계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. 다만,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공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2. 본 대학교 재직 중 본 대학교 및 본인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교원 <신설 2023.4.1.>

**제 4 조 (추천 및 추대절차)**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(부)에서 발의하여 심의를 거친 후 소속 대학의 장이 소정의 자료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단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다.

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추대한다.

**제 5 조 (구비서류)**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학과(부)장이 작성한 공적 개요서
2. 학장 추천서

**제 6 조 (추대취소)** 명예교수가 본 대학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 7 조 (임기)** 명예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 8 조 (처우)** ①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- ②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대학은 여건에 따라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의담당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, 강의시간은 주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목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강의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라도 강의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명예교수는 임용 전 2년간의 수업평가 평균점수, 강의연한 연장자는 1년간의 수업평가 평균점수가 8.0 미만일 경우에는 강의를 제한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4.1.>

⑤ 기타 명예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중전 제8조의 제4항은 제8조 제5항으로 이동]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